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02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윤영석 · 박덕흠 · 박성훈
김태호 · 구자근 · 유용원
박성민 · 곽규택 · 조경태
최형두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

한편,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와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 규정과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본원칙, 수리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재설정하고, 국가유산

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을 중심으로 수리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
임(안 제1조, 제3조, 제33조의2, 제37조제2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를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로 한다.

제3조 중 “원형보존”을 “가치유지 및 회복”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를 “가치 유지 및 회복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을”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제1호 중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을 “가치 유지 및 회복에”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형대로”를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u>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u>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u> ----- ----- ----- ----- ----- ----- ----- ----- -----.</p>
<p>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u>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u> 하며,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 ----- ----- <u>가치유지 및 회복에</u> ----- ----- ----- ----- ----- ----- -----.</p>
<p>제6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p>	<p>제6조(성실의무)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 승인) ①·② (생략)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3. (생략)

④ ~ ⑥ (생략)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생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2. (생략)

----- 가치 유지 및 회복
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
을 -----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가치 유지 및 회복에 -----

2.·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
칙에 따라 -----

1.·2. (현행과 같음)